

인천공항 난민지원 공익활동 사례발표회

일시: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 오후 6시

장소: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주최: 인천지방변호사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후원: 대한변호사협회

참여대상: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난민지원업무 종사자 등

신청방법: 구글링크 (<https://forms.gle/DDfjnCxxWgmymBib7>) 또는 신청 QR 코드



시간	일정
16:00 - 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사 이향희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더글라스 디살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대행)• 전체 사회 문지혜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 단장
제1세션 16:10 - 17:10	인천공항 난민사건 승소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장: 김원규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발제: 이승경 변호사 인천변회 인권위원회 위원 /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 허은경 변호사 인천변회 인권위원회 위원 /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 최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부단장
17:10 - 17:20	휴식
제2세션 17:2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 이탁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송윤정 변호사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운영팀
18:00	폐회



인천지방변호사회
Incheon Bar Association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개회사			
이향희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			5
개회사			
더글라스 디살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대행)			6
발제 1			
인천공항 난민지원을 위한 인천지방변호사회의 노력	이승경		10
발제 2			
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공항난민 법률지원변호사단활동 보고	허은경		18
발제 3			
인천공항 난민사건 승소사례 소개	최수진		27
토론 1			
인천공항 난민지원 공익활동 사례발표회 토론문	이탁건		36
토론 2			
인천공항 난민지원을 위한 인천지방변호사회의 노력	이종찬		41
토론 3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활동 - 인천공항 난민 지원을 중심으로-	송윤정		48
토론 4			
인천공항 난민지원 공익활동 사례발표회 토론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운영팀	54

오늘 인천공항 난민지원 공익활동 사례발표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향희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례발표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경험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이 인천 공항 내 난민을 접견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의 유일한 구제수단인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난민 신청자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난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소송구조, 국선변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난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에게 소송비용, 접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의 활동이 전국 어느 변호사회보다 활발하고, 여러 건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지원변호사단 활동을 통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 통역의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 또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세션에서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향희

Good afternoon, my name is Douglas DiSalvo, Representative ad interim of UNHCR Korea.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Incheon Bar Association for co-hosting this event.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Korean Bar Association for joining us as a sponsoring organization.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lawyers who provide legal assistance to asylum seeker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ho are participating as presenters and panelists in today's forum. We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Incheon Airport Immigration Service for participating in the panel discussion while working around the clock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UNHCR has been deeply concerned about the sound operation of the refugee system at the ports of entry and exit and has actively assisted in its establishment, as asylum-seekers who seek international protection at the border are in a more vulnerable position than other asylum-seekers and are in greater need of protection, and UNHCR is also the first point of contact for asylum-seekers who have not yet entered Korea. As the participants are well aware, the UNHCR hotline number is posted in the waiting room, and asylum-seekers call the number at all hours of the day and night to plead their case.

We recognize that the asylum system at the ports of entry has continued to evolve due to the efforts of many stakeholders, and we are deeply grateful to them. In addition to the changes in practice brought about by the judicial rulings, which were brought about by the efforts of the lawyers and lawyers' organizations here, we also not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the immigration waiting room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lthough it was not passed in the last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amendment to establish separate waiting facilities for asylum seekers is also a positive first step toward systemic improvement.

Of course, as today's presenters and panelists will present, we are still faced with man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s that the number of lawyers who provide pro bono assistance is far too small compared to the number of asylum seekers who seek legal assistance.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iscussed at today's forum and beyond.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lawyers from the Incheon Bar Association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who are here today, whose assistance has enabled many asylum seekers to enter South Korea and seek a decis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 on their refugee status, rather than returning home in despair. The lawyers' raising of the issue has made it possible for various stakeholders to gather here today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system, and I am especially grateful to everyone at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Incheon Bar Association, which recently launched a new pro bono program for asylum seekers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 sincerely hope that the discussion here today will not end here bu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continued discussions in the future. UNHCR will continue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Thank you.

안녕하세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대행 더글라스 디살보입니다.

먼저 행사를 공동 주최해주신 인천지방변호사회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또한 후원 단체로 참여해주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사례발표회에서 사례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주시는 인천공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수행해주시는 변호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인천공항에서 불철주야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시는 외중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출입국항 난민제도가 구성되고 확립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건전한 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국경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신청자들은 다른 난민신청자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어 그 보호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며,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이들이 1차적으로 보호를 요청하는 기관도 유엔난민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참가자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출국대기실에는 유엔난민기구 핫라인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으며, 난민신청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번호로 연락하여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가 계속 발전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과 변호사단체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사법부의 판단으로 변화된 실무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시행한 출국대기실 운영의 법적, 제도적 개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난민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시설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일용 제도개선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첫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발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것과 같이, 여전히 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법률조력을 구하는 난민신청자의 수에 비해 무료로 조력하는 변호사의 수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고민은 오늘 사례발표회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인천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 때문에,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지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새롭게 인천공항 난민신청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시작해주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논의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진정 희망합니다. 유엔난민기구도 필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대행

더글라스 디살보

발제



인천공항 난민지원을 위한 인천지방변호사회의 노력

-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이 만들어지고 활동하기까지 약 10년간의 발자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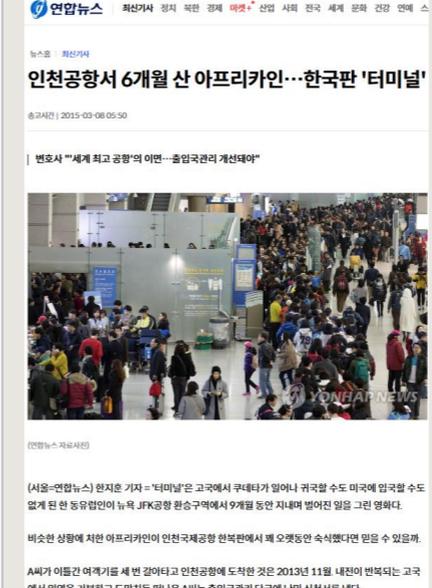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
이승경 변호사

1. 인천공항 출입국인에 대한 관심의 시작

-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매월 월례회를 통해 그때그때의 인권 관련 이슈, 주로 인천지역의 인권 관련 이슈를 논의
- 2015년 3월 8일경 언론에 “인천공항판 ‘터미널’ ”이라면서 한 아프리카인의 사연이 보도됨
- 2015년 3월 27일 발표된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 등으로 2014년 한 해동안 선진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숫자가 866,000건으로 그 전해의 596,600건보다 45%나 증가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이 발발했던 1992년 이후 22년만에 최대 수치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음
- 이에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난민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목 차

1. 인천공항 출입국인에 대한 관심의 시작
2.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방문 시도 및 실태파악 노력
3.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 구성 및 활동



인천공항서 6개월 산 아프리카인...한국판 '터미널'

송고시간 | 2015-03-08 09:50

변호사 "세계 최고 공항"의 이면...출입국관리 개선돼야"

하지만 당국은 난민 신청 사유가 부족하다며 A씨의 입국을 불허하고 이틀날 그를 태우고 온 항공사에 송환지시서를 보냈다. 영아에 시몬 A씨가 전술을 오락가락한 것이 지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귀국하면 금세 구속될 것이라며 버틴 A씨는 항공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송환 대기실(출국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친선관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해 가나인 소송전을 시작했다.

완송구역 내 대기실은 한번 들어가면 출국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사실상 구금시설이었다. 당시에는 징구조차 갖지 못했다. A씨는 기가서 치킨버거와 콜라로 끼니를 때웠다.

A씨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송을 3건이나 냈다.

송환 대기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구소송,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송,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 등이었다.

우선 인천지법은 작년 4월 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그제야 A씨를 완송구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줬다. 무려 5개월 만에 풀려난 것이다.

20여일 후 당국은 면세점 매장을 전전하는 A씨의 입국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에는 송환 대기실 내 난민 신청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가지문이 나왔다.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A씨의 고군분투는 입국 후에도 계속됐다. 모든 소송과 판결이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의 노력은 서울고법이 올해 1월 말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할 포기해 최근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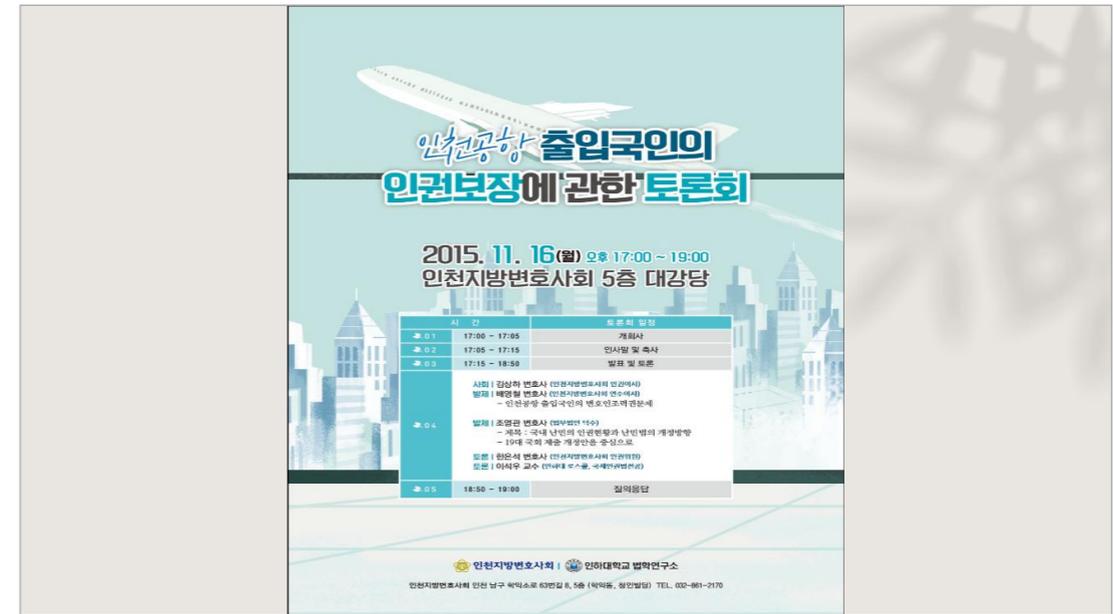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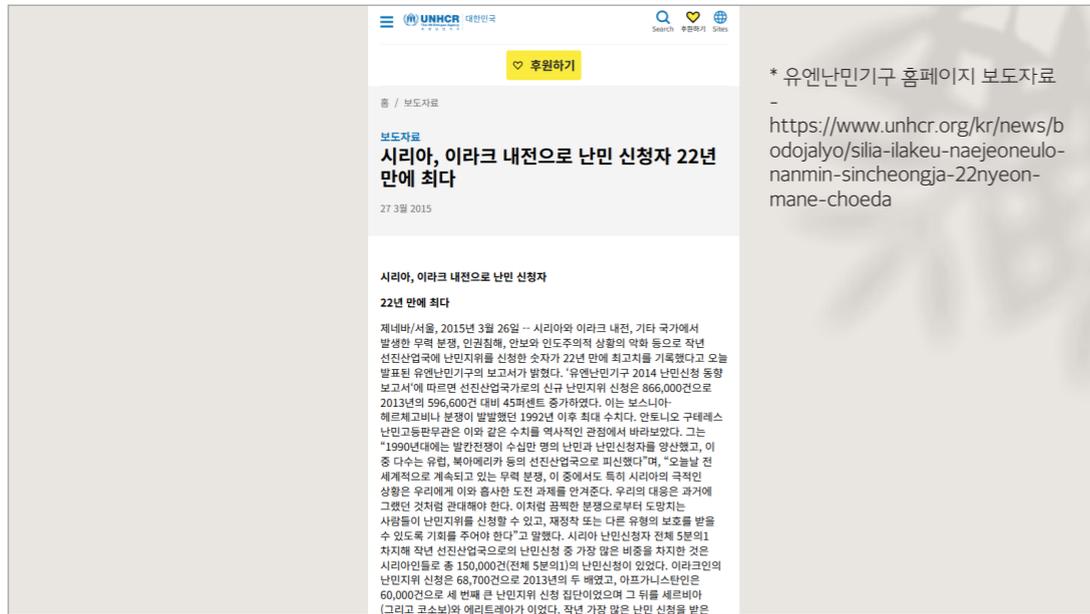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마침내 정식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본안소송 신고도 기다리고 있다.

당국이 규정을 엄격히 따진 데 반해 현재와 현재는 인권보호의 가치에 집중했다. "가room은 규정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집중하세요"라는 영화 '터미널'의 대사를 상기시켰다.

그동안 A씨를 돌보아준 것으로 도와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별 변호사는 "세계 최고 공항"의 이면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난민법 시행에 걸맞은 출입국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 뉴스기사 - 한지훈 기자, "인천공항서 6개월 산 아프리카인...한국판 '터미널'", 「연합뉴스」, 2015. 3. 8.



2.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방문 시도 및 실태파악 노력

- 2015년 9월경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난민심사시의 변호인 조력권 문제’ 및 ‘난민심사중의 난민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그 전단계로 현황 파악을 위해 당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려고 협조요청공문을 보냈으나 방문거부통지를 받음
- 당시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후 난민신청자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받는 사람들을 위한 당직변호사제도 등의 운영을 검토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불발로 더 이상 진전되지는 못했음
-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견학을 다시 추진해 보았으나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인천공항 출입국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토론회 개최

- 2015년 11월 16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관 5층에서 ‘인천공항 출입국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토론회’ 개최
- 당시 발제 주제는 ‘인천공항 출입국인의 변호인조력권문제’, ‘국내 난민의 인권현황과 난민법의 개정방향’이었음



- 2019년 8월경 포천 농가에서 일하기로 한 네팔인들이 네팔 당국의 출국 승인이 늦어지자 포천시에서 비자를 취소하여 입국이 불허되었으나 출국을 거부하며 농성하는 일이 발생, 보도됨
- 꾸준히 인천공항 난민 사안에 관심을 가져오던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는 당시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이 민간인 항공사협의회에서 관리되는 문제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음
- 그러나 2020년~2022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더 이상의 논의 및 활동을 하지 못하였음

3.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 구성 및 활동

- 2023년부터 유엔난민기구와 연락이 되어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출국대기실에 있는 난민신청자를 접견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2023년 3월 24일 유엔난민기구와 난민 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1) 유엔난민기구가 인천지방변호사회와 난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난민지원 변호사 풀을 구성하도록 할 것, 2) 인천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실태 파악을 위한 방문 계획, 3)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풀이 구성되면 관련 교육 추진 등을 논의하였음
- 초반에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내에서 그때그때 가능한 인원이 인천공항 난민신청자를 접견하고 불회부결정취소소송을 진행함

-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만으로는 난민신청자 접견 및 소송 지원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인천지방변호사회 전체 공지를 통하여 인권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난민에 관심 있는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을 추가로 모집,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고 2023년 10월 10일 첫 회의를 진행함
-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산하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은 총 1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돌아가면서 인천공항 난민신청자를 접견하고 소송 지원을 하기로 함
-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난민지원 사업에 대해 알리고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접견 및 소송 지원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해 오면서 승소사례 등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중
- 인천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도 인권위원회 예산 증액 및 공익인권변론기금 운영 등으로 인권위원회의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법률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최근 법원에서 변호사보수에 대하여는 소송구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며...

-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거의 10년째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오던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등 출국대기실의 외국인 관련 문제에 있어서 작년부터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
- 출국대기실 환경 등 대우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유엔난민기구,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발전하기를 바램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공항난민 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 보고

- 인천지방변호사회
- 허은경변호사

인천변호사협회 공항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활동

목적

[법률지원활동]

- 공항체류 난민신청인 접견 및 법률상담
- 난민인정신청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대리

[판결례]

- 난민인정심사불회부 취소소송 판단
- 승소사례 판결례

[마치며- 나아갈 길]

[법률지원활동] 1. 공항체류 난민신청인 접견 및 법률상담

6) 출입국에서의 난민신청 회부율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출입국에서의 난민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출입국사무소에서의 난민신청과 달리 출입국에서의 난민신청은 입국 후 심사자격을 검증하는 회부/불회부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에서 회부결정을 받으면 입국과 함께 난민신청이 가능하지만,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본국으로의 (강제)송환과 공항에서의 무기한 대기 중 하나의 여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불회부의 불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변호사 상담자는 여러 절차상(예: 변호사 접견의 어려움과 충분한 복지가 지원되지 않는 긴 시간과 비-장소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공항에서의 평균 회부율은 36.2%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의 의지를 밝힌 100명 중 30여명만이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공항에는 여전히 심사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난민들이 존재합니다.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인정신청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받은 난민신청인 접견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신청
But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신청인
(지난 10년간 한국 공항에서 회부율은 36.2%
: 난민인권센터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중)

-> 인천공항에서 체류 or 인천공항체류

연도	회부율 (%)
2013	39.6
2014	35.2
2015	71.7
2016	34.4
2017	28.2
2018	44.7
2019	21.2
2020	26.6
2021	59.5
2022	59.6

1. 공항체류 난민신청인 접견 및 법률상담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신청인은 인천 변협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 1) '불회부결정서' 판단 사유 등 안내
- 2) 이후 법률구제 절차
- 3) 유사 사안, 판례 따른 구제 가능성 등을 상담

-> 계속 인천공항에 체류하며 법률구제절차 OR 출국할지를 결정

법률상담 후 체류or 출국 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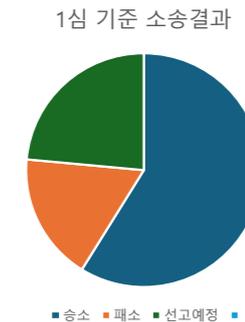
결정	비율 (%)
체류	75
출국	25

2.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대리

- 인천변회 변호사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받은 난민신청인을 공항 접견& 법률상담 직후 '취소소송 대리 여부' 결정
- 신청인의 난민인정신청 사유 자체가 '난민'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대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 ex)사인간의 불화 등
- 접견한 변호사가 취소소송 대리 원칙으로 대리 여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정 위한 노력
 - > 접견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다는 결정
 - > 인천변회 변호사단에서 재차 신청인 접견&회의
 - > 사유(신청사유자체가 난민 어려움 등) 명확하게 안내
- why?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
다른 기관의 법률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

2.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대리

- 인천변회 변호사단 취소소송 대리
- 취소소송 소송대리 결과(24.6.21.기준)
- 2023. 7. 3 첫 신청인 분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소장 접수
- 23. 11. 24. '원고 승소 판결' 시작
- 현재까지 총 17건의 취소소송 대리(3건항소/ 1심:승소7, 패소3, 계속 4건)
- 7:3



2.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대리

-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한 노력
- 대부분 난민 신청 사유를 입증할 증거 전무
- 신청인을 통해 추가 입증 자료 받기(사진 등)
- UNHCR의 공식 자료 한국어로 번역
- 해외 기사 번역(한국 보도 기사와 논점 달라)
- 원고 승소판결 판시(파노의 회원)
 - 파노가 정부의 지침에 반대하며 정부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파노 소송 암하라족 청년들이 체포, 구금되고 있으므로, 파노를 포함한 암하라족 구성원의 경우 전가적 정치적 의견에 따라 박해를 당하고 있는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이 파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파노 측에서는 정부의 그와 같은 발표가 거짓이고 오히려 해당사건은 정부군에 의해 암하라족인 학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에 대한 진위와 파노의 성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23구단 52649).
- 원고 승소판결 판시(‘파노(FANO)’의 회원)
 - 피고는 파노가 2019. 1.경 메템마에서 발생한 58명의 퀘만트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 2020. 11.경 마이 카드라 마을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로 ‘불법적인 테러단체’로 규정, 에티오피아 정부의 정당한 절차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원고 2023. 8.경 에티오피아 정부에 의하여 암하라족에 대한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의 대규모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보도 자료제출, 에티오피아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정권을 주도하는 민족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민족 간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인 범죄로 간주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행위 주체 또는 책임 소재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 > 사건의 진위나 파노의 성격에 보다 면밀한 심리가 필요

2.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대리

- 1심 판결 이후
- 원고가 승소한 7건 중 2건 출입국관리소에서 항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7월 선고예정)
- 원고가 패소한 3건
- 패소판결 직후 인천 변회 변호사 공항접견
- 1심 판결문 내용 및 향후 항소심 등 절차, 판례를 기초로 승소가능성 등 법률상담
- 세분 중 두분 패소 받아들이고 출국
- 남은 한 분 항소심 진행 중(7월 선고예정)

난민인정심사불회부 취소소송 판단

-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장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국 후의 난민인정신청에 관한 제5조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제5조와 달리, 그 사전 단계로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난민법 제6조의 위임을 받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장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해 난민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 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판결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예외적 사유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 역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 있다.

승소사례 판결례

- 출입국 주장 사유: '사인의 위협으로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

나이지리아에서 불상의 테러단체(Unknown Gunmen)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위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말리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주장

•원고의 주된 주장인 테러단체의 위협 등을 일반적으로 사인의 위협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사실이나, 위 단체의 활동내용과 원고의 거부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견해를 원인으로 하는 박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23구단51493)

승소사례 판결례

- 출입국 주장 사유: '사인의 위협으로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

나이지리아에서 불상의 테러단체(Unknown Gunmen)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위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말리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주장한다. 원고의 주된 주장인 테러단체의 위협 등을 일반적으로 사인의 위협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사실이나, 위 단체의 활동내용과 원고의 거부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견해를 원인으로 하는 박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23구단51493)

•원고의 주된 주장인 여자친구의 오빠들로부터의 폭행 및 협박 등은 일반적으로 사인의 위협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종교적 견해를 원인으로 하는 박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는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23구단51653)

승소사례 판결례

- 출입국 주장 사유: '치안 불안 등의 사유로 난민인정 될 수 없다'
- 판결
- 원고는 에디오피아 국적 외국인으로 중국을 출국하여 싱가포르로 입국하였으나 싱가포르에 입국이 불허되고, 중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 신청
-> 원고는 암하라족으로 집권부족인 오모로족의 공격을 받고 집단학살 대상이 되고 있어 박해 받을 공포를 이유로 난민 신청
- 원고의 주된 주장인 본국의 치안 불안 등은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사실이나, 치안불안과 관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2023구단52564).

승소사례 판결례

- 출입국 주장 사유: '난민신청서 기재 사항, 면접진술이 허위이다'
- 판결
- 원고가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난민면접을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에 명백히 허위의 진술이라고 불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의 상황 등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고, **설령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23구단 51493).
- 원고가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 명의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체포되기 전 아내에게 원고를 대리하도록 위임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은행거래는 아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23구단 52625).

승소사례 판결례

- 출입국 주장 사유: '난민신청서 기재 사항과 면접진술이 불일치하다'
- 판결
- 원고가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난민 면접을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의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와 통역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난민인정심사에서 상세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3구단51653).

승소사례 판결례

- 출입국 주장 사유: '브로커를 통해 들어왔다(거짓 난민)'
- 판결
-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준 'A'라는 사람이 입국 브로커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본국에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난민인정 신청인이 궁박한 상황에서 본국을 출국하기 위해 비공식적 내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국을 감행하는 경우 또한 상당수 존재하므로, 원고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오로지 경제적 목적에 있다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3 구 단 52915,52649,52663,52687).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공항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허은경변호사였습니다.

maemlaw@naver.com

인천공항 난민사건 승소사례 소개

- 발표자 변호사 최수진 -

■ 사건개요

- 원고는 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으로서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의 신뢰성에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심층 입국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심층입국심사 당시 원고는 아랍어로 된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받았는데 박해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항목에 체크하였고, 아랍어 통역을 동반한 입국재심 인터뷰에서도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피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원한다는 원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입국불허가조치를 하였습니다.
- 그제서야 원고는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폭행, 지속적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신청 5일만에 난민인정심사불허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허부사유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원고는 UNHCR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단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난민법률지원단에서 원고를 면담하여 피고의 난민불허부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승)

-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입국심사 인터뷰 과정에서의 진술과 난민면접 당시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통역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난민인정심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
- 원고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

■ 출입국장에서 하는 난민인정신청 절차 (난민법 제6조)

- 외국인은 입국심사 때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장에서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되면,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출입국장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출입국장에서의 난민신청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⑤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⑥법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⑦그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장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대해 따로 규정한 취지에는 대하여 “입국 전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자

- 격 있는 신청자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을 미리 방지해 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따라서 출입국장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간소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할 것이고,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난민법」 제8조에 의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해 위 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52093 판결)
- 이 사건에서 피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즉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그 사유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한정

-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는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회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국 전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시간 내에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기 위하여 출입국장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함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 출입국장 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원고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난민신청자의 지위

-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①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 ②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자를 “난민신청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난민법은 이러한 난민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①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②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자료를 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며, ③난민인정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④변호사조력, ⑤면접시 신뢰관계자의 동석, ⑥통역, ⑦난민면접조서 확인, ⑧자료등 열람·복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⑨난민신청자에게는 강제송환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권리는 “난민신청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며, 원고와 같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난민인정불회부취소소송은 적어도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난민인정심사와 동일하게 취급

- 원고는 경제적 이유로 입국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경제적 이유로 입국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낮은 나라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돈을 벌러 입국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피고는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의 국적국이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조직을 단속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당한 위협은 사인에 의한 피해일 뿐 박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서 피고는 난민인정심사와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난민인정심사 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난민법의 취지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 원고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곧바로 난민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기타 절차상의 문제

- 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불회부결정의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공항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인천공항의 경우 공항을 벗어나 영종도 내 시설에 머물 수 있으나, 그 시설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가 이들과 접견을 위하여서는 구속피고인 접견처럼 미리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천공항 또는 영종도 내 시설 등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난민법의 제정, 시행은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자를 여전히 시설 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도 국가입니다.
- 구속 피의자, 피고인에게 필요적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처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중에 있으면서 일정한 장소에 체류가 강제되는 자들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변호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장 제출시 인지대, 송달료의 경우 소송구조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소각하 판결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이들의 소송비용까지 대납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 1심의 경우 UNHCR, 난민단체 등을 통해 변호사들과 연결되어 소송을 수행해 주나, 2심, 3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현실에서 닥치는 문제입니다. 심급대리원칙상 2, 3심까지 당연히 대리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외국인들은 심급대리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상 구금상태에 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결국, 이들은 1심 변호사에게 계속 소송을 맡아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변호사들의 개인적 판단과 호의에 의해 상소심 조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소액이기는 하나 경유증도 문제인데, 무료변론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경유증이 면제되지 않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부담들은 모두 개별 변호사에게 지워질 수밖에 없는데, 사소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난민 조력에 힘을 쏟는 변호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



인천공항 난민지원 공익활동 사례발표회 토론문

24.6.21.
이탁건



난민인정심사회부/불회부 통계 개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4.
신청		516	188	47	42	391	338	72
결정	소계	511	190	53	41	376	341	85
	회부	241	13	12	25	223	87	21
	불회부	264	162	41	16	143	246	62
	철회	6	15	0	0	10	8	2
회부율		47%	7%	25%	60%	57%	26%	29%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쟁점

- 성문법의 공백, 또는 난민협약의 국내적 이행의 한계
 - 불회부결정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 변호사 조력권의 인정 여부
 - 송환대기실 내 수용의 행정구금 여부
 - 출입국항 내 수용의 행정구금 여부
- 국경통제와 난민보호의 중첩/충돌
- 강제송환 위협의 가시화 - “국경에서의 거부”



출국대기실 제도 변화 개괄

*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 “2022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2022, 212면 재구성

제도 구분	제도 내용
제1기: 민·관 공동운영의 송환대기실	기간 : 2002년 2월~2014년 상반기 수용시설 운영주체 : 출입국당국, 항공사운영협의회 공동운영
제2기: 송환대기실 이용신청서 작성 하의 민·관 공동운영의 송환대기실	기간 : 2014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추정) 수용시설 운영주체 : 출입국당국, 항공사운영협의회 공동운영
제3기: 환송구역	기간 : 2018년 하반기(추정)~2022. 8. 17. 수용시설 운영주체 : 실질적으로는 관리·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제4기: 국가운영의 출국대기실	기간 : 2022. 8. 18.~현재 수용시설 운영주체 : 출입국당국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관련 주요 판례

인천지법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이 사건 처분은 [...] 입국불허결정의 전제인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입국불허결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4. 8. 25. 선고 2014인마5 결정	[1]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되어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신보호법상 구제대상인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선례변경) 나.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신청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신청심사불허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송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인천지법 2021.8.9. 선고 2020인라8 결정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인 위 환송구역 출국장에서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발적으로 환송구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수용자에 의하여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 주장은 항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난민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강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항고인이 난민신청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환송구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수용자 또한 인정하고 있다 [...]”

입법적 개선 노력

-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대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 및 대기실의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 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그 밖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2021.8.17. 법률 제18397호)

-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장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약자 등 취약자가 대기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입국불허결정 또는 난민신청심사 불허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는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함.”

박주민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39 (2022. 12. 15.) [임기만료 폐기]



입법적 개선 노력

-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39호)” (2023.5.)

IV. 관계기관의 의견

1. 법무부

법무부는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우 향상을 위해 공항 내의 출국대기실과 구분되는 공항 밖의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2.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출국대기실의 운영 현황, 송환대상외국인의 호송 등에 있어 제기된 실무상 문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 *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2022.9.22.), 박주민 의원실 · 대한변호사협회 · 유엔난민기구 · 난민인권네트워크 공동주최, 46-49면 요약 및 재구성
- 출국대기실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 주기적 모니터링 통해 제도의 건실성 보장 필요
- 국가의 강제송환의무는 국경 내 공항을 포함한 국가 영역 내 모든 사람이 그 대상임
- 유엔난민기구는 (1) 난민신청자의 출입국항 대기실 구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국한되어야 함, (2) 의료, 심리사회적 서비스 제공 필요, (3) 성별 고려한 처우 및 가족 공간 제공 필요, (4) 아동 구금 금지, (5) 아동 및 다른 취약한 난민신청자 외 인도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신청을 포함한 다른 모든 신청은 정규적 난민신청심사 절차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한 바 있음
- 명칭 또는 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송환대기실 또는 환송구역에서의 장기간 대기가 구금적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동의 제한과 신체의 자유의 박탈과의 차이는 정도의 것이지 본질의 차이가 아님)
- 불허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의 대기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개별적인 취약성 및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의 섬세한 설계 필요 (진료, 재판 출석 등을 목적으로 한 외출 허용, 정보 제공 확대, 법률조력 접근 확대 등)
-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의 빈도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 국적국 상황, 항공편 가용 등에 따라 급증감할 수 있음. 이를 충분히 고려한 시설 설치 및 관리 인원 확보가 필요함. 대기(수용) 인원의 과다는, 제도 설계의 진취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환경 악화로 인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출국대기실 상담시 최근 제기되는 문제 및 과제 개괄

- 의류 부족
- 소화불량/위통증 등
- 송환 절차에 대한 개별 항공사의 몰이해, 강압적인 출국 종용
- 터미널2 출국대기실 - 이동의 자유 제한
- 인천공항 내 법질서에 대한 교육 강화 - 경범죄, 절도 등
- 변호사 선임 후 통보 없는 출국



공항 출국대기실의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

1. 서론

최근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된, 공항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시도 과정 중 불거진 일련의 사건에 관하여 살펴볼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조사 과정 중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통해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출국대기실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불회부결정을 받은 후 불복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외부의 도움도 적절히 받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난민신청자가 적절한 시기에 불복 절차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보는 것처럼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 대비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이에 저는 출국대기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2. 현황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이에 불복하여 자신의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절차적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처분 후 90일 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스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은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실제로 행정소송에 이르는 난민신청자의 숫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 해 20-30건 정도의 불회부결정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기간 불회부결정 건수는 2022년 154건, 2023년 256건이었습니다.¹

¹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회신한 자료에 근거하였습니다(<https://nancen.org/2398>).

3. 원인

이처럼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들, 즉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외국인 중 다수가 불회부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법원이 반복하여 판결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 및 증명책임 소재²와 동떨어진 채 '실질심사화'되어 과도하게 많은 숫자의 불회부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³

둘째, 입국이 봉쇄된 신청자가 불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법률조력인 없이는 스스로 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불복절차 진행을 할 수 없는 현행 실무의 문제. 첫째 원인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불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그나마 대응해볼 수 있을텐데,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 스스로 불복수단을 발동할 수 없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4. 비교 사례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 누 43336 판결은 이 제도의 취지와 증명책임 소재에 관해 3-4면에 걸쳐 자세히 논증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선언하였고, 이를 따르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회부결정취소소송은 국가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높은 원고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난민활동가 법률조력인들이 제기한 최근 2년간의 불회부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70-80%에 육박합니다.

이 문제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이나 난민불인정 결정 등에 불복하는 소송을 스스로 제기할 수 있는 현행 실무와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집니다.

즉,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어서 인터넷 접근이나 휴대폰 사용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라도 보호소 내 비치된 소장 양식을 활용하거나 보호소 담당 공무원을 통해 소장 양식을 안내받고 해당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우편 접수할 수 있는 길이 현재도 열려 있습니다(담당자가 얼마나 협조적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보호외국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보호소 측에서 이를 끝내 불허 내지 거절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급의 정도 및 외부 연락 수단에서의 접근' 측면에서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외국인보다 훨씬 열악한 지위에 놓인 피보호외국인에 대하여도 이렇게 자신의 체류 내지 난민신청에 관한 국가의 결정에 스스로 불복할 수 있는 실수가 마련된 것에 반해, 출국대기실 내 외국인(출입국 관련 법제를 어겼다는 등의 사정 없이 오로지 '난민신청을 시도한 자'로서 그곳에 머물게 된 자들)은 이러한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변호사 등의 법률조력인과 연결된 경우에만' 불복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조력인의 풀(pool)이 작다 보니 불복기간(90일) 내에 결국 불복 수단을 발동해줄 조력인을 찾지 못하고 권리 구제를 다룰 기회를 잃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앞서 통계로 제시한 20-30건의 불복소송 vs. 250건을 넘는 불회부결정의 숫자 대비가 이러한 경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5. 대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 스스로 '보호소 측 담당 공무원의 우편 발송 등 조력'을 받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무에 비추어 현재 출국대기소 내 난민신청자가 불복기간 내에 법률조력인을 찾지 못할 경우 스스로 불복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불회부결정 통지 시 불복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복 소송(불회부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장의 양식,

그 기재 사항, 필수 제출 서류, 소송비용 납부 방법 및 소장 제출 방법(우편) 등에 관한 안내를 포함합니다.

(1-1) 참고로 이 안내와 관련하여 현행 불회부결정 사유서 통지가 '오로지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것에 관한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회부결정취소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법원이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불회부결정이 당사자에게 주는 심대한 침익(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모든 권리가 한 번에 박탈되고 박해가 우려되는 본국으로 송환될 위험)'을 고려할 때, 그 불회부의 이유가 오직 한글로만 제공되는 것은 절차 권리 보호 차원에서 매우 미흡한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유서에 적힌 한국어는 외국인이 제대로 번역하기도 어려운 장문 내지 개조식의 문장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에, 실제로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자신이 왜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권리를 모조리 박탈당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경에서 퇴장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에 관한 구체적 안내'는 '불회부사유에 관하여 최소한 영어를 병기(영어 번역은 앱을 통해서 비교적 의미 전달이 분명하다는 점에 착안)'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가야 합니다.

(2) 출국대기실 내 담당 공무원은 해당 외국인이 작성한 소장 및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출국대기실 내 외국인은 소송 기간 동안 출국대기실을 벗어날 수 없어 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구조에 관한 안내 및 신청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소송구조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 납부에 관한 안내도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2-1) 90일 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조력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토론문에서 이를 제외한 이유는, 행정심판의 경우 선례가 거의 없고 기존 결정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사례도 찾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복 절차를 통해 불회부결정에 관한 검토를 받고 싶은 의사가 분명함에도 단순히 법률조력인을 구하지 못해 결국 90일 넘기고 강제퇴거 당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행정심판 제기 안내와 조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⁴

⁴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2023. 8.)> 70면 이하는 실무상 사문화 되다시피 한 행정심판 불복 대신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불복절차 개선'을 주문한 점도

6. 해외 사례

출입국향 등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상기와 같은 출입국의 '최소한의 조력' 제공은, 출입국향 심사제도를 운영 중인 주요국가들의 법률조력 제도를 고려하면 당연히 실현되어야 합니다.⁵ 정부도 이러한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덜란드: 모든 공항/국경 비호신청자는 무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신청 센터에는 상주하는 변호사가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Board)에서 소송 대리인 지정 및 일정 관리를 담당합니다.

(2) 스위스: 공항에서 비호를 신청한 사람은 1차 신청에 대한 준비 단계부터 비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료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프랑스: 출입국향에서 불회부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48시간 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중에는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독일: 공항 도착 시점에 유효한 신분 증명 문서가 없는 경우 및 '안전한 출신국'에서 도착하여 비호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공항 난민신청절차가 적용되며, 거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관련 법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제한적이지만 변호사의 무료 법률조력도

참고할만 합니다. 위 자료는 출입국향 심사 제도를 갖는 주요 국가들이 그 불복수단으로 주로 행정소송 제도를 택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국가는 대부분 형식적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회부심사를 운영하고 불복절차는 단기간 집중적인 재심사 절차로 운영 하거나, 회부심사를 실질심사로 운영하되 심사 기한을 충분히 두어 사실상 국내 난민심사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우 이의신청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72면).

출처: 채현영, 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국제 기준 및 해외 사례 (2019년도 공항난민 인권침해사태 보고서)

가능한 구조로 불복 절차 조력 중입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 법률조력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으나, 캐나다 국경청은 출입국항 비호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판단을 3일 내에 신속히 내리며 부적격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해서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즉,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불회부결정을 하므로 불복에 관한 법률조력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 (i) 타국에서 난민지위 받음
- (ii) 미국에서 육로로 입국했고 예외에 해당 없음
- (iii) 안보 또는 형사법 및 인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음
- (iv) 과거에 부적격 결정 받았음
- (v) 과거에 난민불인정 결정 받은 바 있음⁶

6. 결론

불회부결정취소소송에서 피고 출입국은 종종 '출입국항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캐나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가 신청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도 그 증명책임의 소재가 신청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캐나다의 불회부결정은 전술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에 국한되기 때문에 애초에 불회부 결정을 받는 신청자들의 비율이 낮은 데다가 신청자 스스로도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적습니다. 반면 한국의 출입국항 심사 제도는 -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실질심사화'되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들로 불회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캐나다 제도를 비교 예시로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출국대기실의 난민인정신청자가 불회부결정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출입국이 전술한 '최소한의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불회부결정 통지시 불복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추가하고 불회부결정 사유를 영문으로 제공하며 신청자가 작성한 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이미 외국인보호소에서는 현행 실무로 운용 중인) 절차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국항 심사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들의 법률조력 사례를 살펴보다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조력은 당장 제공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고로 최근 출입국청은 늘어가는 불회부결정취소소송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불회부결정이 256건에 이르러 전체 신청건수 중 불회부비율이 무려 74.3%에 달하는 통계를 확인해보면, 이 정도로 불회부결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를 다루는 소송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늘어날 소송에 대응할 인력과 자원을 미리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회부결정을 다루는 소송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법률조력이 더해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불회부결정이 여전히 내려지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다룰 수 있는 수단은 극히 협소하다는 것. 그러나 불회부결정에 불복하려는 소송은 그 결정 숫자만큼 늘어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점,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원이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출입국항 심사제도가 운영되고 불회부결정 숫자와 비율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면, 불복소송에 대응하는 인력도 그만큼 늘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이해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활동 -인천공항 난민 지원을 중심으로-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송운정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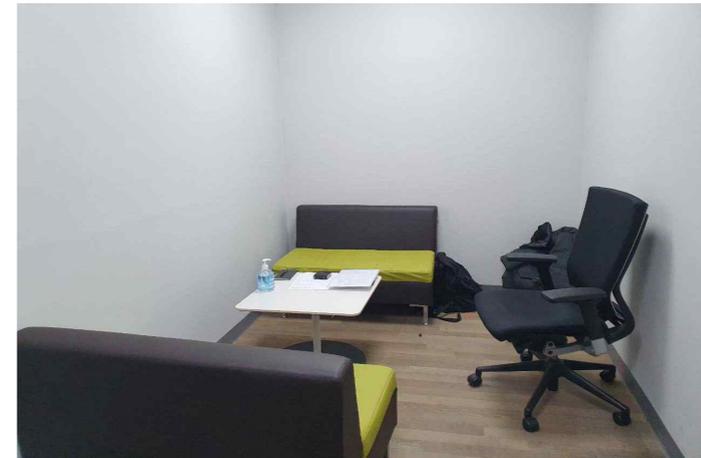
1.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단 소개



CONTENTS

1.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단 소개
2.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의 연혁
3. 현재 케이스 진행 현황
4. 실무에서의 고민과 개선방안

1.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단 소개



2.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단의 연혁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단의 시작과 현재

당시 2012. 12. 난민법률지원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변호사 모임인 난민법률지원 커뮤니티 수요자들 22명을 모아 2014. 2. 26. '난민법률지원단'(단장: 정인진 변호사)으로 위촉함.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에서 난민법의 기본 취지에 입각하여 판단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음.

이후 2020. 9. 28.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결의로 난민신청 등 법적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단장: 양희철 변호사) 단원 30명을 임명하였음. 단원들의 역량 강화 및 통역인 풀 리스트 마련, COI 리서치 데이터 구축, 인천공항 난민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

2023. 5. 제2기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단장: 양희철 변호사)으로 51명의 변호사 단원을 임명하여 운영 중에 있음. 2기부터는 인천지방법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난민 접견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 명절 맞이 공항 방문 등을 진행함.



2.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단의 연혁

서울고법, 난민신청자 강제퇴거보호명령 취소하라

A 대한변협신문 | © 일력 2014.11.03 10:11 | □ 호수 517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승소

난민신청자에 대한 권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강제퇴거를 명령하고, 보호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관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변협사협회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단장 정인진 변호사)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2013누52638).

서울고등법원 제1형정부(재판장 박종훈)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난민불확실 난민으로 볼 수 있으며, 난민불인정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이지 않은 한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소송 종료 전 강제퇴거를 명하는 이유가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의 징벌을 면탈하게 하기 위한 것이려면, 강제퇴거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난민신청자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항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난민신청자의 처지를 고려해 일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더 가벼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거부가 확정되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집행인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조신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8>



2.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단의 연혁

2014년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위촉

A 남지홍 기자 | © 승인 2014.03.03 15:10 | □ 호수 484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2012년 12월 난민법률지원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변호사 모임인 난민법률지원 커뮤니티 수요자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난민을 위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소송구조절차를 요청, 난민인정신청절차·난민소송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2달에 한 번씩 내부세미나를 통해 변호사단 상호간의 노하우와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장 정인진 변호사가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위촉장을 받고 있다.

위촉한 협회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난민들에게 한줄기 빛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난민들을 위해 고민하고 충실히 연구해 많은 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이번엔 신규 위촉된 변호사들에게 심화교육 및 난민법률지원 교육 프로그램인 RELATE(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법조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0>



2.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단의 연혁

난민 행정절차소송 등 법적 조력 ... '인권 지킴이'

A 강선민 기자 | © 일력 2020.10.12 09:44 | □ 호수 802

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임명하고 1차 회의 개최



난민 신청 등 법적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힘을 모았다.

대한변협사협회(협회장 이진희)는 지난달 2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는 고영남 변호사 외 29인이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초대 단장은 양희철 변호사(사시 52회)가 임명됐다. 부단장은 이정일 변호사(사시 25회), 간사는 송윤정(변시 6회), 정은혜(사시 44회) 변호사가 맡는다.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앞으로 △난민 신청 단계 △난민지원불인정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단계 △난민 신청인의 법적 지원 보호를 위한 부수 업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허위면접조서 작성 관련 재신청 사건에서 법적 조력을 지원한다.

출처: 법조신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3>



3. 현재 케이스 진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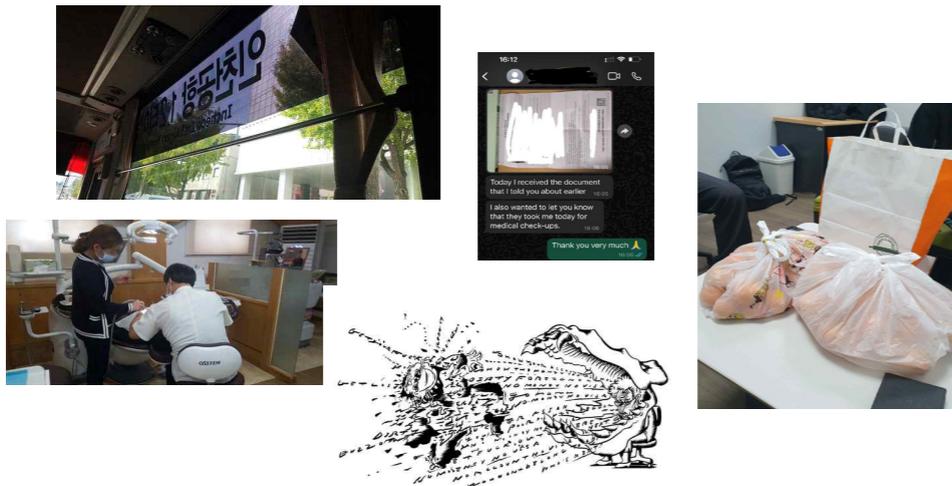
- * 배정된 총 사건 수 : 17건
- * 난민 당사자의 국적: 부룬디, 중국, 우간다, 튀니지, DR콩고, 튀르키예, 이라크, 파키스탄, 모로코, 러시아 등 10개 국가
- * 신청 사유: 정치적 견해 11건, 종교3건, 성소수자3건, 민족 2건
- * 요청 단체: TFC, 난민인권센터, UNHCR, 어필 등 난민조력 단체
- * 진행 사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소송 11건, 난민신청사건 3건, 이의신청 1건,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2건(항소심)
- * 담당 변호사단 배정 구성: 하나의 사건을 팀으로 함께 담당하는 것이 원칙, 최소 1~2명의 유경험자+처음 맡은 변호사를 함께 매칭.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만 안내하여 지원을 받거나 배정을 하며, 팀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상담 내용과 공유받은 자료를 전달함.



4. 실무에서의 고민과 개선방안



4. 실무에서의 고민과 개선방안



감사합니다

